

2007년 제13회 법무사 제2차시험 문제

시험과목	민 법
------	--------

법원행정처

【문 1】 甲은 1995. 5. 3. 乙로부터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甲 소유의 A부동산에 관하여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甲이 위 금원을 변제하면 다시 甲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한 후(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甲은 乙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후 A부동산은 B부동산과 C부동산의 2필지로 분할되었다. 甲은 1999. 6. 7.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금원에 대한 변제공탁을 하였고, 그 후 이루어진 甲과 乙 사이의 B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이 사건 약정은 담보약정이고, 위 변제공탁은 유효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乙이 위 공탁금을 출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甲의 채권자 丙이 2001. 10. 18. 甲의 변제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근거로 2001. 11. 26.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甲은 당시 위 변제공탁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법원에 말하지 아니하였다.

甲은 乙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C부동산에 관하여 甲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甲의 채권자 丙이 공탁금을 출급해 갔으므로 甲이 다시 변제공탁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고 있다.

乙 주장의 당부(當否)를 논하고, 위 사안에서 乙이 甲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다른 주장이 무엇인지 논하시오. (50점)

【문 2】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甲은 丙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가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丙의 독촉을 받게 되자 공사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의 乙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전액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1) 그런데 甲은 丁으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乙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전액을 丁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이 경우 동일한 채권을 양수한 丙과 丁의 우열관계를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30점)

(2) 甲이 丙에게 한 채권양도를 채무자인 乙이 승낙하려고 한다. 승낙의 법적 성질 및 효과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2007년 제13회 법무사 제2차시험 문제

시험과목	형	법
------	---	---

법원행정처

【문 1】 甲이 유산을 빨리 상속받기 위해 친구인 乙과 공모하여 甲의 양부를 살해한 경우에 있어서 甲과 乙의 형법상 죄책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문 2】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의 형법상 죄책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2007년 제13회 법무사 제2차시험 문제

시험과목	형사소송법
------	-------

법원행정처

【 문 】 (사례) 강간치상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된 피고인 甲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범행 당시 술에 취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다.

- 1) 간이공판절차에 관하여 설명하고,
- 2) 위 사례에 있어서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논거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2007년 제13회 법무사 제2차시험 문제

시험과목	민사소송법
------	-------

법원행정처

2007년 제13회 법무사 제2차시험 문제

시험과목	민사사건관련 서류의 작성
------	------------------

법원 행정 처

【 문 】 김갑남(주민등록번호 : 580808-1234890, 주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567-89, 전화번호 : 555-5678, 전자우편 : kabnamkim@nanana.com)은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분쟁내용을 설명하면서 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다 음

○ ‘대한전기’라는 상호로 전기부품 도매업을 하는 김갑남은 ‘한강전업’이라는 상호로 전기부품 소매업을 하는 이정동(주민등록번호 : 600909-1567567,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345-67)에게 전기부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왔는데, 김갑남과 이정동은 2005. 12. 31. 현재 그 미수 외상대금을 금 1억 원으로 정산하였다. 당시 이정동은 2006. 2. 1.까지 김갑남에게 위 정산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액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월 1%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이정동은 2006. 2. 1. 위 정산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6 대 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고향 후배인 박병서(주민등록번호 : 620707-1234678, 주소 : 서울 강남구 세곡동 987-12)에게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고 2006. 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미, ① 2004. 2. 2. 채권자 주식회사 신촌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금 5,000만 원), ② 2005. 6. 10. 채권자 민국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금 9,000만 원), ③ 2005. 11. 30. 채권자 최고돈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채권액 금 2,500만 원)가 차례로 마쳐져 있었다.

○ 이후 박병서는 2006. 2. 28. 민국은행에게 위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인 금 8,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았으며, 같은 날 이정동을 통하여 최고돈에게 위 ③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 중 금 1,5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았고, 이에 따라 2006. 3. 9. 위 가압류기입등기도 말소되었다.

○ 이 사건 토지의 시가 및 위 ① 주식회사 신촌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 준 일	2006. 2. 1.	2006. 2. 5.	2007. 10. 1.
이 사건 토지 시가	3억 2,000만 원	3억 1,000만 원	3억 원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4,100만 원	4,110만 원	5,000만 원

○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6년에 1㎡ 당 42만 원이고, 2007년에 1㎡ 당 40만 원이다.

김갑남의 위 진술내용을 모두 진실한 것으로 보고 그 의사를 존중하여 2007. 10. 1.자로 김갑남에게 가장 실효성 있고 적법하며 유리한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소장을 작성하시오(이정동에 대한 정산금 청구소송과 아울러 그 정산금 확보를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소장 작성일인 2007. 10. 1. 기준으로 하고, 민국은행 명의의 위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위 변제 후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은 고려하지 말 것). 소장에 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갖추어 기재하고, 청구원인은 필요하고도 충분한 요건사실 위주로 기재하되(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그 계산근거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할 것), 그 밖의 사실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장황하게 기재하지 말고, 또한 소장의 오른쪽 윗부분에 소가와 첩부인지역을 기재하시오.

2007년 제13회 법무사 제2차시험 문제

시험과목	부동산등기법
------	--------

법원행정처

【문 1】 공유물분할에 따른 등기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50점)

【문 2】 갑과 을은 갑의 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갑 또는 을이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신청인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약술하십시오. (20점)

2007년 제13회 법무사 제2차시험 문제

시험과목	등기신청 서류의작성
------	---------------

법원행정처

【 문 】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별첨 등기부등본을 참조하여 다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신청방식은 서면에 의한 방문신청을 전제로 함)

다 음

1. 유증자 김서울은 상속인으로 처 박한양, 자 김일남, 김이남이 있으나 그의 재산 중 아래 부동산을 조카 김평양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2006. 10. 30.에 사망하였다. (유언의 방식과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었다.)
2. 수증자 김평양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유언검인조서등본을 교부받았으나, 유언검인조서에 “유언증서에 날인된 인감이 김서울의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상속인 김이남의 진술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3. 또한 위 부동산은 유언증서의 보관인 망 김서울의 변호사 전변호가 검인청구를 하기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유증자 및 상속인들은 등기필증을 모두 분실하였다.
4. 법무사 최법무는 등기신청인들로부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 받았다.

아 래

- 가. 부동산의 표시 : 서울 강남구 일원동 100 전 1000m²
- 시가표준액 : 30,000,000원
 -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로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음.
- 나. 인적사항
- 유증자 및 상속인 : 별지 등기부등본과 같음
 - 수증자 : 김평양 (631225-1024362) 서울 성동구 금호동 150
- 다. 대리인 : 법무사 최법무, 사무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 500번지 ☎ 생략
- 라.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 1)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2007. 1. 1. 전자신청등기소로 지정)
 - 2) 신청서의 작성일 : 2007. 10. 5.
 - 3) 첨부서면
 - ①명칭과 통수만을 신청서에 기재 ②날인할 곳에는 ㉠으로 표시 ③위임장 작성은 생략 ④기타 불필요한 기재사항은 삭제바람.
 - 4) 위 사안은 문제 구성을 위한 것임.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거래신고일련번호/거래가액)

거래신고일련번호: _____, 거래가액: _____ 원
이 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소 유 권 (일 부) 이 전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등 기 의 무 자				
등 기 권 리 자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동산 표시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	금 원	금 원
2.	금 원	금 원
3.	금 원	금 원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		금 원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생략
등록세 금 원		교육세 금 원
세액합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부동산고유번호		
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전화:) (또는)위 대리인 (전화:)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첨부합니다.

【등록세세율표】 (지방세법 제131조 내지 제140조)

부 동 산 등 기	기 본 세 율	비 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다만, 농지의 경우	가액의 8/1,000 가액의 3/1,000	◆ 부동산가액 : 표준액(신고/거래가액)임 -산출금 세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3,000원임 -교육세 등록세액의 20/100 (부동산/법인/상호 공통)
상속외 무상 소유권이전(증여, 유증 등) 다만,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하는 경우	가액의 15/1,000 가액의 8/1,000	
소유권이전(상속, 무상 제외)-매매, 경락, 불하, 교환 다만, 농지의 경우	가액의 20/1,000 가액의 10/1,000	
소유권 보존(증축-증가부분만)	가액의 8/1,000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가액의 3/1,000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 부동산가액 기준 2. 저당권 : 채권금액 기준 3. 지역권 : 요역지가액 기준 4. 전세권 : 전세금액 기준 5.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 기준	2/1,000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 기준) 가등기 (부동산가액 기준)		
신탁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시) 다만,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가 되는 경우	가액의 10/1,000 가액의 5/1,000	
기 타 (변경, 경정, 말소)	매건당 3,000원	
법 인 등 기		
설립, 증자, 합병 (상사회사, 영리법인)	금액의 4/1,000	-산출금 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에는 75,000원임
설립, 출자, 증액 (비영리법인)	가액의 2/1,000	
자산재평가	금액의 1/1,000	
본점·주사무소의 이전	매건당 75,000원	
지점·분사무소의 설치	매건당 23,000원	
기타 (변경, 경정, 말소)		
상 호 등 기		
상호의 설정 및 취득	매건당 45,000원	
지배인 선임, 대리권 소멸	매건당 6,000원	

※ 지방세법(시행령)과 각종 조례 등에 의하여 가산, 감산,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매 입 대 상	매 입 금 액
<p>1. 부동산등기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 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p> <p>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1) 주택</p> <p>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p> <p>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그 밖의 지역)</p> <p>다)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그 밖의 지역)</p> <p>라)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그 밖의 지역)</p> <p>마)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그 밖의 지역)</p> <p>바) 6억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그 밖의 지역)</p> <p>(2) 토지</p> <p>가)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그 밖의 지역)</p> <p>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그 밖의 지역)</p> <p>다) 1억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그 밖의 지역)</p> <p>(3)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p> <p>가)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그 밖의 지역)</p> <p>나)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그 밖의 지역)</p> <p>다) 2억5천만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그 밖의 지역)</p> <p>나. 상속(증여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1)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그 밖의 지역)</p> <p>(2)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그 밖의 지역)</p> <p>(3) 1억5천만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그 밖의 지역)</p> <p>다.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p>	<p>◆기준 시가표준액</p> <p>13/1,000</p> <p>19(14)/1,000</p> <p>21(16)/1,000</p> <p>23(18)/1,000</p> <p>26(21)/1,000</p> <p>31(26)/1,000</p> <p>25(20)/1,000</p> <p>40(35)/1,000</p> <p>50(45)/1,000</p> <p>10(8)/1,000</p> <p>16(14)/1,000</p> <p>20(18)/1,000</p> <p>18(14)/1,000</p> <p>28(25)/1,000</p> <p>42(39)/1,000</p> <p>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으로 함.</p> <p>자본금의 1/1,000</p>
<p>2. 법인설립등기(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시에 한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요전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공업유치지역내에서 신설되는 법인의 등기는 제외한다)</p>	

※ 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대상자의 범위와 면제항목 등은 주택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서면에의한 방문신청)

등 기 의 목 적	수수료	비 고	
1. 소유권보존등기	9,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9,000원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9,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9,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 착오 또는 유류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2,000원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경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나. 각종권리	2,000원	
	다. 토지표시	없 음	
	라. 건물표시	2,000원	행정구역·지번·면적 단위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6. 분할·합병등기	가. 토지	없 음	
	나. 건물(구분등기 등)	2,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2,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예고등기	없 음		
9. 말소등기	2,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	2,000원		
11. 멸실회복등기	없 음		
12. 가압류·가처분등기	2,000원		
13. 압류 (채납처분 등 등기)	가. 지방세	2,000원	
	나. 의료보험 등 공과금	2,000원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2,000원		
15.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없 음		
16. 신탁등기	가. 신탁등기	없 음	
	나. 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관련 기타 등기	없 음	
17. 환매권등기	가.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 이전등기	9,000원	
	나. 환매권 변경, 말소 등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2,000원	
18.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2,000원		